

| 보건복지부 | 보 | 도 참 | 고 | 자 료 | |
|-------------------|-----------------------|-------------------------|-----|--|--|
| 배 포 일 | 2020. 9. 1. / (총 14매) | | | | |
| 중앙사고수습본부 | 팀 장 | 박 은 정 | | 044-202-1711 | |
| 전략기획팀 | 담 당 자 | 한 연 수 | | 044-202-1714 | |
| 서울특별시 | 과 장 | 김 정 일 | | 02-2113-7660 | |
| 감염병관리과 | 담 당 자 | 유 효 연 | | 02-2133-7669 | |
| 인천광역시 | 단 장 | 안 광 찬 | | 032-440-7801 | |
| 코로나19대응 추진단 | 담 당 자 | 이 은 실 | | 032-440-7849 | |
| 경기도 | 과 장 | 윤 덕 희 | 전 화 | 031-8008-5420 | |
| 감염병관리과 | 담 당 자 | 최 문 갑 | | 031-8008-5422 | |
| 중앙사고수습본부 | 팀 장 | 김 충 환 | | 044-202-3210 | |
| 취약시설지원팀 | 담 당 자 | 최 환 | | 044-202-3254 | |
| 보건복지부 상황관리총괄1팀 | 팀 장 담 당 자 담 당 자 | 김 국 일 유 정 민 김 민 주 | | 044-202-2420 044-202-2419 044-202-2414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현황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최근 60대 이상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증 환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화된 거리 두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9월 6일 (일)까지 모두가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평 생 친 구

○ 이와 함께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긴급돌봄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9월 2일(수)부터 11일(금)까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 우선 3개 구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연락·관리 등 점검(모니터링) 시행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정사항 발견 시 확대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8월 30일(일) 2,839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교회가 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1.4%(40개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다. 이들 교회에 대해서는 어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8월 19일(수)부터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까지 고위험시설 1만2269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2개소는 안내문 부착 등을 지도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은 4,442개소를 점검한 결과 27개소에 대해 출입자 관리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평 생 친 구

- 이와 함께 물류시설내 방역관리체계, 작업장 및 공용공간 방역 관리여부 등 유통물류센터 9개소도 점검하였으며,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당초 8월 31일(월)까지 내렸던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
 -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 등 **방문판매업체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 활동은 가능하다.
 - * 다단계판매업체 10, 후원방문판매업체 755, 방문판매업체 4,084
 -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격리조치·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38건, 1,786명을 수사하여 582건, 956명을 기소하였으며, 이중 12명을 구속하였다.
 -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소재 확인,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 **소방청**(청장 정문회)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 3570명**과 **의심환자 6만 5196명** 등 **총 8만 943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도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이송 679건을 포함하여 총 5,090건의 이송을 진행하였다.











평생 친구

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 활용정보 | 정보항목 | 보유기관 | 비고 | |
|------------|----------|------------|---|--|
| 휴대폰 이동량 | 인구 이동 건수 | S이동 통신사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

- 분석 결과 8월 19일(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8월 23일(일)부터 27일(목)까지 이동량은 거리 두기 시행 전 (8.9.~13.) 같은 기간 대비 **약 12%(1,034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8.9.~13.) 86,151천건 → (8.23.~27.) 75,816천건

< 휴대폰 이동량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이동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혁신 정부 생산민국



3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 □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 안부전화, 식사지원, 활동지원, 가정방문, 비대면 프로그램 등
- 우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 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 긴급돌봄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 휴관 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한편, 시설에서의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 및 이용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시설의 방역 관리도 계속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지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의 돌봄 현황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4 전공의단체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재 전공의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진과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환자분들의 우려 가 매우 큰 상황이다.
-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정부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확대 등 의료 정책을 철회해야만 진료 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 오늘 정부는 세부 설명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 □ 우선,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3가지^{*}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으로,
 - *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업이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 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을 위반을 요구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평 생 친 구

-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해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 부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대학원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므로,
-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하였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
- 정부는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과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 공공의대의 세부사항들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 따라서 전공의 단체의 요구 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 뿐이며,
- 정부는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하여, 전공의단체 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납득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 또한, 정부는 전공의 단체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을 문제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청하였다.
- □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반복하여 제시한 바 있다.
 - 또한,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정부는 이러한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안전신고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31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9523명이 고,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53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3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할 계획이다.
- □ 어제(8.31.) 신고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총 683건**으로 방역수칙 위반 410건, 행정조치 위반 255건, 기타 12건 순이다.
- 최근 교육이 많고, 다수인과 대면 접촉 많은 보험설계사 관련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8월 30일(일)부터 9월 6일(일)까지 보험설계사 등의 대면 영업을 자제 권고와 집합 교육 금지 등 감염·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였다.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 (行)·3금(禁) 수칙 포스터
 -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8.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교습소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 녹서실·스터디카페·학원 십합금지 및 교습소 십합제한은 8.31일 0시무터 시행 | | | | | | |
|---|----|--|--|--|--|--|
| 구분 | | 조치사항 | | | | |
| | | 수도권 | 비수도권 | | | |
| 집 협 모임· [·] | 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 | |
| 스포츠 | | ○ 무관중 경기 전환 | | | | |
|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 | | |
| 다중 이용 시설 | 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라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 파크, 종교사실, 실내결환장, 공한장 영화만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M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이상), 뷔페, PC방 O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의 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시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지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기능 | | | |
| 학교 | |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O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O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 | |
| 기관. | 공공 | O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 | 무인원 제한 | | | |
| 기업 | 민간 |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 | |

- 11 -











평생친구

붙임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u>7시</u>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김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충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 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평생친구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